
신흥국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2022.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 1 장 실태조사 개요

제 1 절 조사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 조사의 필요성

-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한류열풍으로 한국산 제품이 인기를 끌며 상표 무단 선점, 위조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 중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 결과가 없음

* 상표 무단 선점('21) : (베트남) 628社, 661건 (태국) 489社, 554건 (인니) 753社, 840건

**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적발 규모: ('20) 144,315건 → ('21) 225,685건

- 현재 확보가 가능한 데이터는 IP-Desk의 상담사례 및 지원 현황 건수에 불과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지재권 피해 실태 파악은 불가
- 현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 침해유형, 애로사항, 현지 대사관 및 정부에 바라는 점 등 현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

□ 조사의 주요내용

- (기업 일반현황) 기업 유형, 사업 형태, 해외법인 보유 여부, 현지법인 활동 영역, 진출 국가, 주력제품 및 서비스, 기업설립연도 및 총매출액
- (해외 분쟁 예방 활동 및 분쟁 경험 현황) 기업보유 지식재산권, 분쟁피해 사전 예방 활동, 해외에서 경험한 지식재산권 분쟁유형, 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
- (우리 기업의 침해피해 현황) 침해받은 권리 유형, 침해당사자 유형, 침해 형태, 피해 유형, 대응 활동 등
- (해외기업이 제기한 침해 분쟁 현황)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권리 유형, 침해를 주장하는 해외기업의 유형, 침해 의심유형, 침해 대응 활동,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기관의 인지 여부 등
- (우리 기업의 대응 및 정부 지원 요청사항) 도움 요청 기관 유형, 무대응의 이유, 대응의 애로점, 정부 요청사항 등

제 2 절 조사의 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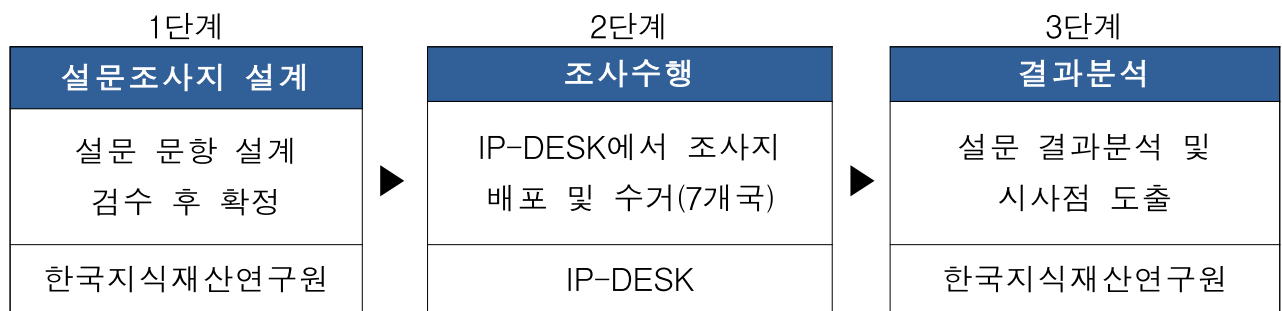
☐ 조사대상

- IP-Desk가 설치된 신흥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함

*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 조사방법

- 조사지 설계와 결과분석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조사는 IP-DESK에서 수행



☐ 설문 조사 기간

- 2022년 7월~ 2022년 12월

☐ 조사 기업수

- 신흥국(7개국)에 진출한 기업 1,880개 기업 중 23개 기업(이하, 응답기업) 응답

조사대상기업수	응답기업	응답률
1,880 개社	23 개社	1.2%

제 3 절 응답기업 특성

□ 기업일반현황

- (기업규모) 설문에 응답 기업 23 개社 중 중소기업은 21 개, 중견기업은 2 개

(단위: 개社, %)

중견기업	중소기업	총계
2 (8.7%)	21 (91.3%)	23 (100%)

- (사업유형) 응답 기업 23 개社 중 직접 수출기업 19 개, 대리상을 통한 수출기업 9 개, 현지생산 기업 5 개, 수입기업은 2개

(단위: 개社)

직접 수출	대리상을 통한 수출	현지생산	수입
19	9	5	2

- (해외법인 보유여부)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4개社이며, 18개社は 해외 법인 미보유

(단위: 개社)

독자해외법인	합자/합작 해외법인	지점	없음
3	1	2	18

* 독자 해외법인과 지점 항목에 중복 응답한 기업이 있어 총합은 응답 기업보다 많은 24개社

- (현지법인 활동 영역) 현지법인 중 판매법인은 9개社 생산법인은 3개社

(단위: 개社)

생산법인	판매법인	R&D법인	기타
3	9	-	12

* 생산법인과 판매법인 항목에 중복 응답한 1 개社가 있어 총합과 응답기업의 합은 다름

** 기타의견: 현지법인 없음이 12 개社 (1 개社は 개인기업 제조판매로 응답)

- (진출 국가 및 진출 예정 국가) 응답기업이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는 국가는 베트남이(12개社)로 가장 많음 (중복응답)

(단위: 개社)

베트남	인도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기타
12	7	3	7	8	8	8	15

* 기타의견: 미국, 중국, 일본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중동, 싱가포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 (주력상품 및 서비스) 다수의 기업(11 개社)이 화장품 제조 판매유통 기업이었으며, 그 외 의료기기, 의류, 블랙박스 등의 업종도 있었음 (자유 기술)

제 2 장 주요조사결과

제 1 절 해외 분쟁 예방 활동 및 분쟁 경험 현황

□ 해외 분쟁 예방 활동

-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및 권리 유형) 응답 기업 23 개社 중 진출국에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기업은 17 개社이며, 출원 또는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6 개社 있음

⇒ 해외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사의 진출국에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25%의 기업이 해외출원을 하지 않고 있음

- (권리 유형)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중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 16 개社로 가장 많았으며, 특허권(6 개社), 디자인권(6 개社), 실용신안(3 개社), 저작권(1 개社) 順으로 나타남 (중복응답)

보유여부	권리유형	기업수
지식재산권 미보유	-	6 개社
지식재산권 보유	특허권	3 개社
	실용신안	3 개社
	상표	16 개社
	디자인	6 개社
	저작권	1 개社

-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활동) 다수의 기업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자체 또는 외부 기관을 통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단위: 개社, 중복응답)



* 기타의견: 행정기관을 통한 침해단속, 정품인증 스티커 활용

□ 해외 분쟁경험 현황

- (우리 기업의 침해피해 대응 현황) 해외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우리 기업의 가장 많은 대응은 경고장 발송이었음

(단위: 개사, 중복응답)



* 기타의견: 상표권 선점당함, 상표권 도난, 디자인 도용당함, 관련 메일을 보냈으나 응답 없음, 압류 준비, 상표권 등록취소 요청

- (해외기업이 제기한 침해 분쟁 현황) 해외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단위: 개사, 중복응답)



* 기타의견: 구두 연락, 상표 무효 청원, 전시회에서 직접 경고

⇒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국내 지식재산권을 침해 또는 피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의 대응 방법이 경고장 발송 및 수령임

⇒ 따라서, 경고장 발송 및 수령방안에 관한 기업 실무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수령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형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

- (우리 기업의 침해·피침해 피해 규모)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평균 피해 금액은 896.7 백만원,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경고장 발송, 소송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평균 피해 금액은 1766.7 백만원으로 조사되었음

(단위: 백만원, 응답기업수)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한 평균 피해 금액*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한 평균 피해 금액**
896.7 (12 개社)	1766.7 (3 개社)

- *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12개 기업의 평균 피해 금액임, 지식재산권 침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매출액 감소나 시장점유율 하락과 같은 영업상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 및 법률비용 등의 비용을 의미
- ** 외국기업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 발송, 소송 등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3개 기업의 평균 피해 금액임, 해외기업의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및 귀사의 제품 판매 손실액 등을 의미

제 2 절 우리 기업의 침해피해 현황

- **(권리 유형)**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침해를 많이 받은 권리는 상표권이고 그 뒤를 이어 디자인, 특허권 순이었음 (중복답변)

권리유형	기업수
특허권	5 개社
실용신안	1 개社
상표	12 개社
디자인	6 개社
저작권	2 개社

- **(침해당사자 유형)**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거래관계가 없는 현지인 또는 현지 기업에 의해 다수 이루어짐

(단위: 개社,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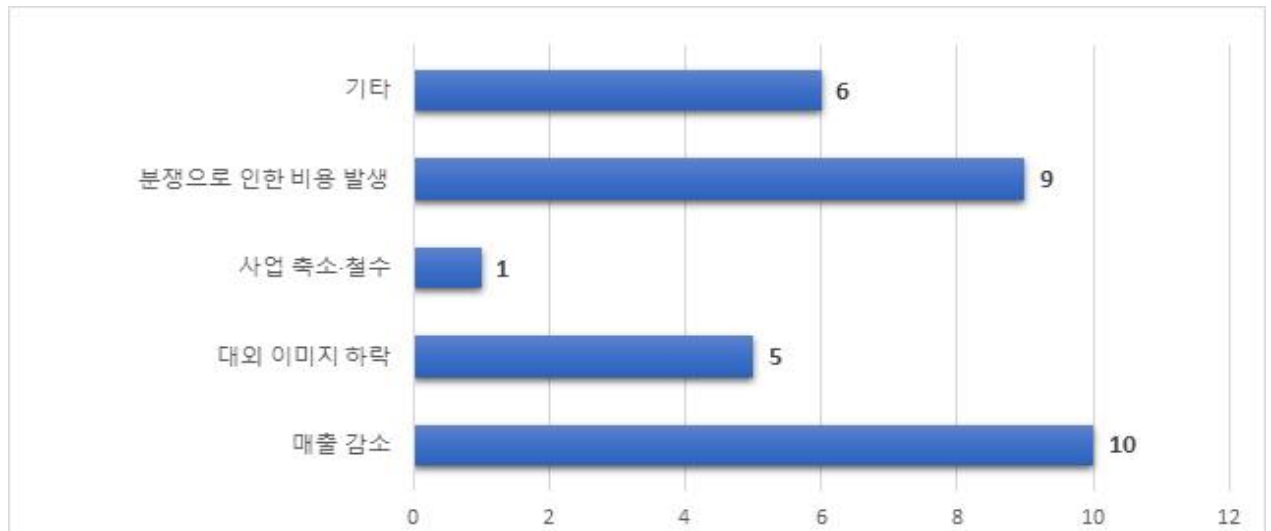
- **(침해유형)** 해외기업은 모조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거나, 모방하여 현지 지식재산청에 지식재산권을 선출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단위: 개社, 중복응답)



- **(피해 유형)** 우리 기업은 해외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와 분쟁 대응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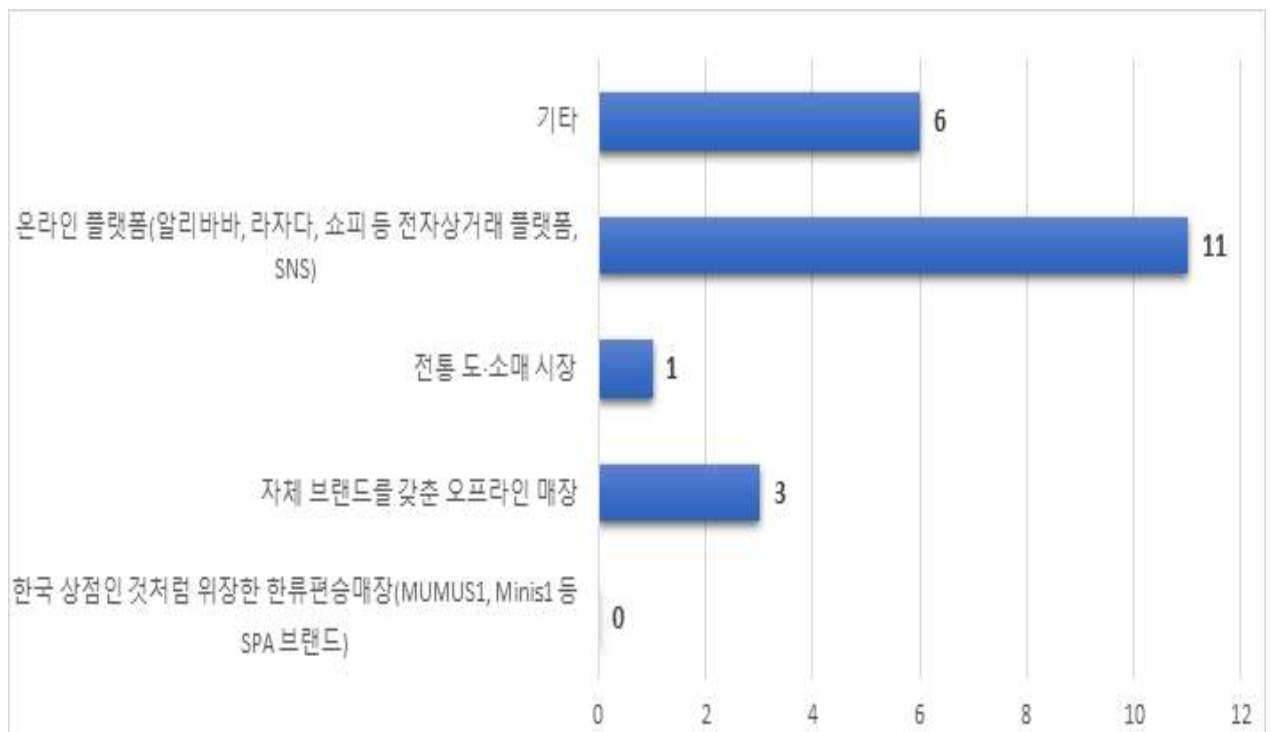
(단위: 개社, 중복응답)



* 기타의견: 선등록 후 사용료 지급을 요구, 사업을 런칭하지 못함, 상표 출원 지연

- **(유통경로)**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침해 물품은 주로 알리바바, 라자나, 소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음

(단위: 개社,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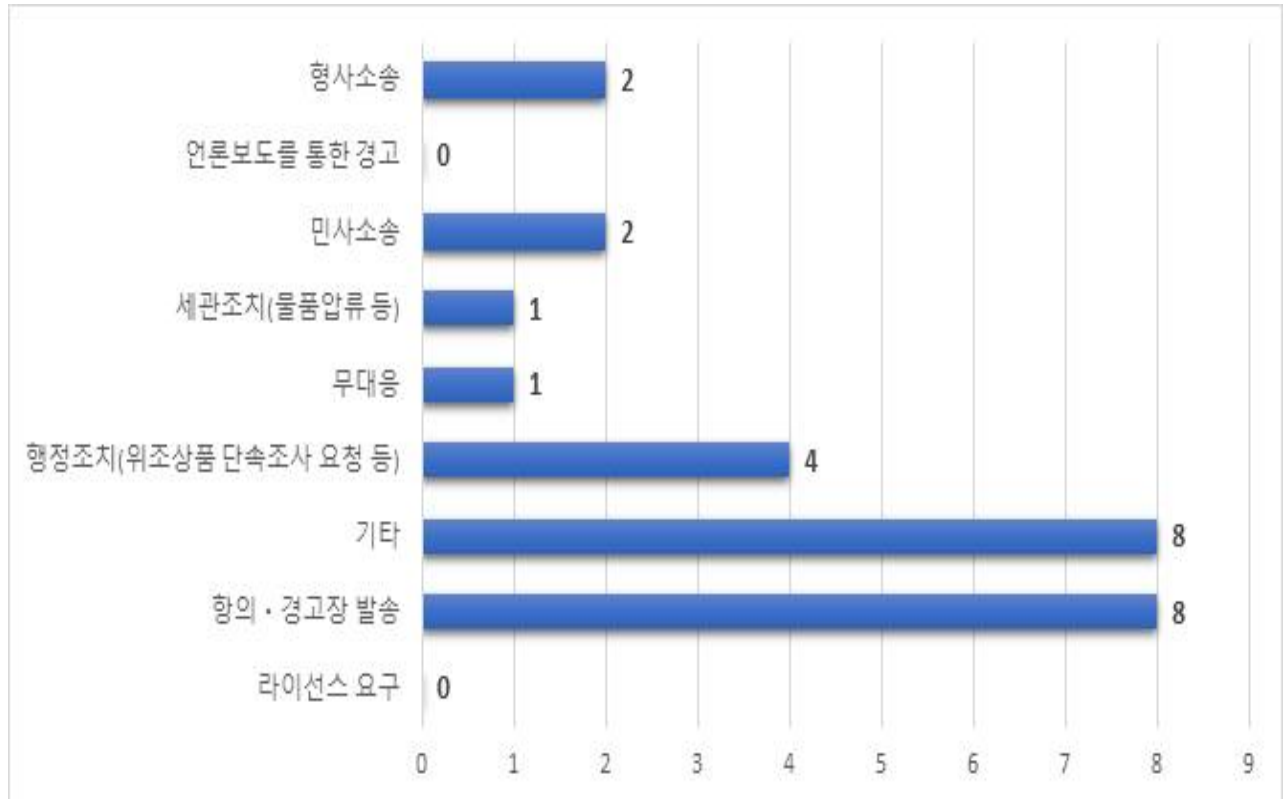


* 기타의견: 홈 센터, 전시회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침해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 필요
 ⇒ 특히, 새로운 유통채널로 인기가 높으나 침해입증이 어려운 SNS에 대한 침해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대응 방법)** 해외기업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은 항의·경고장 발송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높았음. 이어 행정조치를 취하는 비율이 높음

(단위: 개社, 중복응답)



제 3 절 해외기업이 제기한 침해 분쟁 현황

- (경험 유무) 응답기업 23 개社 중 해외기업(혹은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대응 경험이 있는 기업은 5 개社임

(단위: 개社, 중복응답)

권리유형	기업수
없음	18
있음	5

※ 본절 이하 결과는 대응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개사의 응답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됨

- (권리 유형) 해외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제기한 권리 유형은 특허권과 상표권

(단위: 개社, 중복응답)

권리유형	기업수
특허권	2
상표	4

- (침해주장기업)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해외기업은 거래관계가 없는 현지인이나 현지 기업으로 조사됨

(단위: 개社, 중복응답)

침해주장기업	기업수
거래관계가 없는 현지인 또는 현지기업	5
현지의 타국기업(한국 및 현지기업을 제외한 외국기업) 및 타국인	1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인 또는 현지기업	-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 및 한국인	-

- **(침해 의심유형)** 해외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침해 물품을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고 있거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개社, 중복응답)

유형	기업수
국내 또는 해외 현지 국가에서 해외기업의 모조품을 제조, 유통 또는 판매	3
귀사가 해외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모방하여 국내 또는 해외 현지 지식재산청에 지식재산권을 출원 신청	2
타국에서 국내 또는 해외 현지 국가로 모조품을 수입	-
국내 또는 해외 현지 국가에서 타국으로 모조품을 수출	-

- **(대응 방법 및 결과)** 해외기업이 우리 기업에 대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을 경우, 우리 기업은 해외기업과 협상을 하거나, 비침해 입증을 위한 경고장 대응, 이의신청, 무효심판 제기와 같은 대응 활동을 하고 있음

(단위: 개社, 중복응답)

권리유형	기업수
협상	2
지식재산권 비침해 입증 등 경고장 대응	3
해외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의신청/무효심판 제기	2
해외기업이 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파악하여 해외기업에 역으로 민·형사소송 제기	-

- **(분쟁 대응 지원기관 인지 유무)** 해외 지재권 분쟁의 예방·대응을 위해 해외 지식재산센터(코트라 소관)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4 개社, IP-DESK만 알고 있는 기업은 1 개社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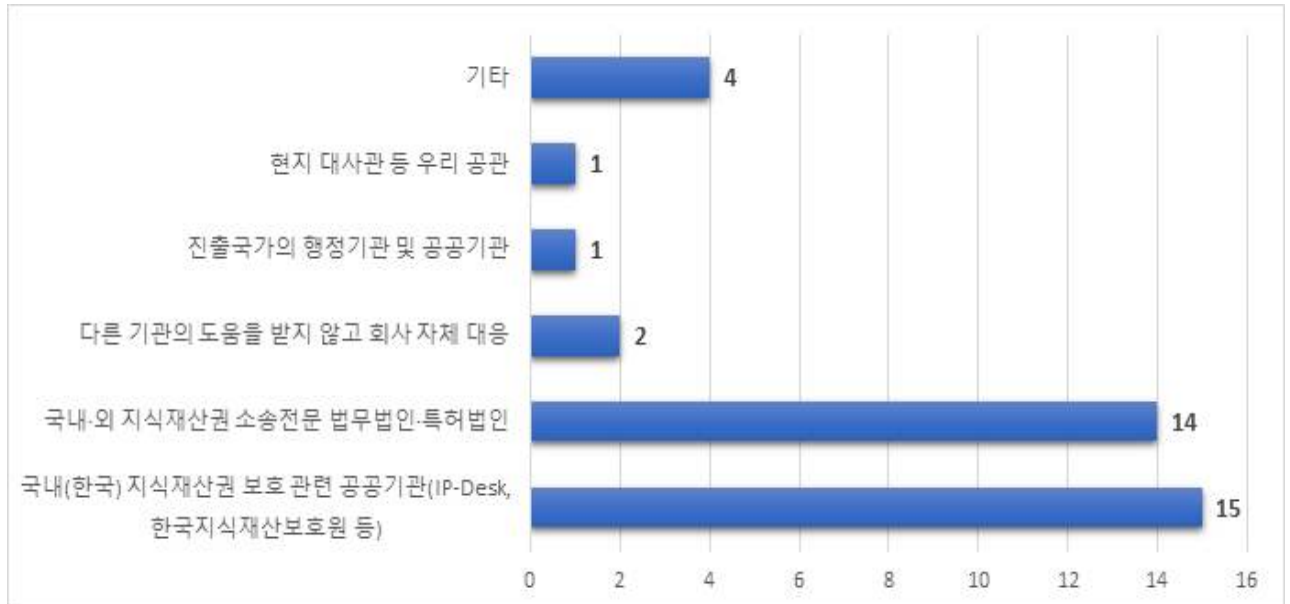
(단위: 개社)

권리유형	기업수
둘 다 알고 있음	4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만 알고 있음	1

제 4 절 우리 기업의 대응 및 정부 지원 요청사항

- **(도움을 요청한 기관)** 우리 기업은 분쟁에 휘말렸을 때,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공공기관이나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 법인·특허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개사, 중복응답)



-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 우리 기업이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원하는 서비스의 부재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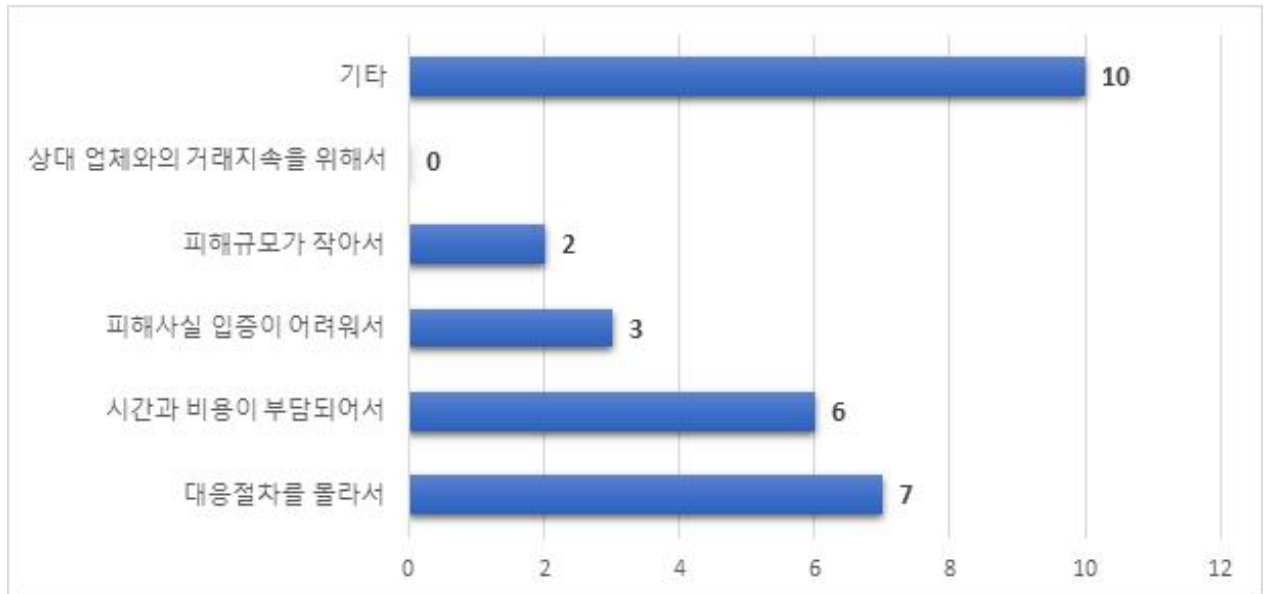


⇒ 분쟁지원기관과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

⇒ 신남방국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

- **(분쟁 발생 시 대응하지 않은 이유)** 우리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 절차를 몰라서,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어서 순으로 조사됨

(단위: 개사, 중복응답)



- **(정부 지원 요청사항)** 우리 기업들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위한 소송 비용·컨설팅, 국내에서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위한 비용·컨설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단위: 개사, 중복응답)



- **(정부 지원 요청사항)**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필요 정보 지원정책 및 제도 보완에 대한 의견(자유 기재형식으로 의견개진)

(현지어와 전문지식을 겸비한 담당자 배치)

- 현지 지원기관에 현지 언어에 능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담당자의 배치가 필요
- 국내 컨설팅 펌을 활용하는 것이 현지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고가(高價)로 이에 대한 지원 필요

(증거수집조사 탐색 지원정책 필요)

- 침해제품을 생산하는 원점 공장에 대한 탐색 및 조사를 위한 지원이 필요
- 증거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개별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 개별국가별 권리 확보를 통한 침해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침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교육이나 자료 배포필요
- 현지에서 주로 접수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자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 및 세미나를 통한 사례 홍보
- 지속적인 진출국에 대한 세세한 정보와 교육, 세미나 개최

(비용지원액 및 범위의 확대)

- 중소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므로, 실제 소송비용 지원 필요
- 지원 비용 및 지원 대상기업 기준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필요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장을 위한 상표권등록과 특허등록 지원 금액 인상

별첨. 설문조사표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피해조사 설문조사표

(베트남, 인도,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등)

<조사개요>

본 조사는 특허청 주관으로 KOTRA가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현황을 파악하여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관련하여 본 조사에서 다루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 디자인(의장) 등 산업재산권을 의미하며(저작권 불포함), 내국법인(우리나라 법에 의해 설립되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법인, 내국법인의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해당국에서의 피해경험에 대해 조사합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호되며, 본 조사의 통계 분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시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특허청(산업분쟁대응과) 및 KOTRA(해외지재권실)는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분쟁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귀하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특허청, KOTRA, 설문조사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피해 조사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응답자 성명, 소속부서/직위, 전화번호, E-mail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2년 10월 00일 ~ 2023. 9월 00일 (1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정보주체 이름 : (인)

동의

I. 기업일반 현황

기업명		응답자 성명	
소속부서/직위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1.1. 귀사의 기업유형, 사업형태, 해외법인 보유여부 등에 대하여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형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사업형태	① 직접수출	② 대리상을 통한 수출	③ 현지생산	④ 수입
해외법인 보유여부	① 독자해외법인	② 합자/합작 해외법인	③ 지점	④ 없음
현지법인 활동영역	① 생산법인	② 판매법인	③ R&D법인	④ 기타()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임

1.2 귀사가 현재 수출하거나 진출한 국가(예정인 경우 포함)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베트남 ② 인도 ③ 멕시코 ④ 태국 ⑤ 인도네시아 ⑥ 필리핀 ⑦ 러시아 ⑧ 기타()

1.3. 귀사가 주력으로 하는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반도체 장비, 컴퓨터그래픽 동영상)

1.4. 귀사의 기업설립연도 및 매출액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말 기준)

설립연도	총 매출액
_____년	_____억원

이전

다음

II. 해외 분쟁예방활동 및 분쟁경험 현황

2.1. 귀사는 해당 진출국에 출원 또는 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있습니까?

- ① 예 (☞ 2.1.1 항목으로) ② 아니요 (☞ VI문항으로)

2.1.1 귀사가 해당 진출국에 출원 또는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특허 ② 실용신안 ③ 상표 ④ 디자인 ⑤ 저작권 ⑥기타()

2.2. 귀사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분쟁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에 수행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①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②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③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해당국가의 세관에 신고하여 위조상품 등 지재권 침해상품 및 경쟁사 지재권 단속
 ④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채용
 ⑤ 별도의 예방활동 없음 ⑥ 기타 _____

2.3. 귀사가 해외에서 경험한 지식재산권 분쟁유형에 대해 모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해당란에 V표시)

분쟁 유형 (복수 응답 가능)	귀사가 외국기업으로 부터 지재권 침해피해를 입은 경우	경고장	경고장을 발송한 경험 있음	☐
		국경 조치	해당국 세관에서 <u>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타사의 제품 압류</u> 경험이 있음	☐
		행정 조치	위조상품 단속 등의 <u>행정조치를 요청</u> 한 경험 있음	☐
		소송 (민사)	민사 소송을 <u>제기</u> 한 경험 있음 (소송 시 원고)	☐
		소송 (형사)	형사 소송을 <u>제기</u> 한 경험 있음 (소송 시 원고)	☐
		기타	(직접기술: _____)	
	외국기업이 귀사가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경고장	경고장을 <u>수령</u> 한 경험 있음	☐
		국경 조치	해당국 세관에서 <u>자사의 제품이 압류</u> 된 경험이 있음	☐
		행정 조치	위조상품 단속 등의 <u>행정조치를 받아본</u> 경험이 있음	☐
		소송 (민사)	민사 소송을 <u>당한</u> 경험이 있음 (소송 시 피고)	☐
		소송 (형사)	형사 소송을 <u>당한</u> 경험이 있음 (소송 시 피고)	☐
		기타	(직접기술: _____)	

2.4. 귀사는 해외에서 어떤 지재권 분쟁을 경험하셨습니까?

- ① 외국기업으로부터 귀사의 지재권 침해피해 발생
- ② 외국기업이 귀사에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고장 발송, 소송 등 제기
- ③ 기타 _____

2.5. 해외에서 발생한 귀사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최근 5년('17~'21년) 간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① 귀사의 지재권 침해피해 (추정)손실액*(2.4.의 ①관련)

: _____ 백만원

손실액: 지식재산권 침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매출액 감소나 시장점유율 하락과 같은 영업상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귀사의 손실액 및 법률비용 등 (구체적인 피해산정이 어려울 경우 침해 전·후를 비교하여 개략적으로 산정)

② 귀사의 지재권 분쟁 (추정)손실액*(2.4.의 ②관련)

: _____ 백만원

손실액: 해외 기업의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및 귀사의 제품 판매 손실액 등 (구체적인 피해산정이 어려울 경우 침해 전·후를 비교하여 개략적으로 산정)

이전

다음

III. 우리기업의 침해피해 현황

다음 질문은 귀사가 해외에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해외기업이 도용함으로써 귀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 경험을 기초로 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해외진출시~현재 사이에 시작·진행·종료된 분쟁에 대해 응답)

3.1. 해외기업에 의해 침해된 귀사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 ① 특허 ② 실용신안 ③ 상표 ④ 디자인 ⑤ 저작권

3.2. 해외에서 귀사의 지식재산권을 누가 침해하였습니까?

- ① 거래관계가 없는 현지인 또는 현지기업
②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인(대리인) 또는 현지기업
③ 현지에서 채용한 현지 직원
④ 현지의 타국 기업(한국 및 현지기업을 제외한 외국기업) 및 타국인
⑤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 및 한국인
⑥ 기타_____

3.3. 귀사는 어떤 형태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습니까?(복수응답)

- ① 해외 현지 국가에서 모조품을 제조, 유통 또는 판매
② 타국에서 모조품을 해외 현지 국가로 수입
③ 해외 현지 국가에서 타국으로 모조품을 수출
④ 외국기업이 귀사의 지식재산권을 모방하여 현지 지식재산청에 지식재산권 출원 신청
⑤ 기타_____

3.4.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귀사가 입은 피해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① 매출 감소
② 대외 이미지 하락
③ 사업 축소·철회
④ 분쟁으로 인한 비용 발생
⑤ 기타_____

3.5. 귀사의 지식재산침해 물품이 불법으로 유통·거래되는 곳은 어디입니까?(복수응답)

- ① 한국 상점인 것처럼 위장한 한류팬승매장(MUMUSO, Miniso 등 SPA 브랜드)
② 자체 브랜드를 갖춘 오프라인 매장 ③ 전통 도·소매 시장
④ 온라인 플랫폼(알리바바, 라자다, 쇼피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SNS)
⑤ 기타_____

3.6. 해외기업이 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복수응답)

- ① 라이선스 요구 ② 항의·경고장 발송
③ 행정조치(위조상품 단속조사 요청 등) ④ 세관조치(물품압류 등)
⑤ 민사소송 ⑥ 형사소송
⑦ 언론보도를 통한 경고 ⑧ 무대응
⑨ 기타_____

이전

다음

IV. 해외기업이 제기한 침해분쟁 현황

다음 질문은 해외기업(혹은 개인)이 귀사가 현지 혹은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 경험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경험이 없으면 5.1 항목으로 이동)

- 4.1. 해외기업(혹은 개인)이 귀사가 현지 혹은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응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4.2 항목으로) ② 아니요 (☞ VI문항으로)
- 4.2. 해외기업이 귀사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지식재산권은 무엇입니까?
① 특허 ② 실용신안 ③ 상표 ④ 디자인 ⑤ 저작권
- 4.3. 귀사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해외기업은 누구입니까?
① 거래관계가 없는 현지인 또는 현지기업
②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인 또는 현지기업
③ 현지의 타국 기업(한국 및 현지기업을 제외한 외국기업) 및 타국인
④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 및 한국인
⑤ 기타_____
- 4.4. 해외기업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귀사의 침해의심 유형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① 국내 또는 해외 현지 국가에서 해외기업의 모조품을 제조, 유통 또는 판매
② 타국에서 국내 또는 해외 현지 국가로 모조품을 수입
③ 국내 또는 해외 현지 국가에서 타국으로 모조품을 수출
④ 귀사가 해외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모방하여 국내 또는 해외 현지 지식재산청에 지식재산권을 출원 신청
⑤ 기타_____
- 4.5. 해외기업이 귀사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확인한 후에 취한 대응방법 및 결과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① 협상
② 지식재산권 비침해 입증 등 경고장 대응
③ 해외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의신청/무효심판 제기
④ 해외기업이 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파악하여 해외기업에 역으로 민·형사소송 제기
⑤ 기타_____
- 4.6. 정부에서는 해외 지재권 분쟁의 예방·대응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코트라 소관)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모두 알고 있음
②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만 알고 있음
③ 지재권분쟁대응센터만 알고 있음
④ 둘 다 모름
⑤ 기타_____

이전

다음

V. 우리기업의 대응 및 정부지원요청사항

5.1. 귀사가 해외 지재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귀사가 도움을 요청한 기관에 대해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 ①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송전문 법무법인·특허법인
- ② 현지 대사관 등 우리 공관
- ③ 국내(한국)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공공기관(IP-Desk,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 ④ 진출국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⑤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회사 자체 대응
- ⑥ 기타 _____

5.2. 귀사가 해외 지재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귀사가 국내(한국)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모름
- ②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음
- ③ 지원 신청 절차가 복잡함
- ④ 회사 내 조직 및 전문인력 활용
- ⑤ 우리 회사가 공공기관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⑥ 기타 _____

5.3. 귀사가 해외 지재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귀사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대응절차를 몰라서
- ② 피해규모가 작아서
- ③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④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워서
- ⑤ 상대 업체와의 거래지속을 위해서
- ⑥ 기타 _____

5.4. 귀사가 해외 지재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이를 대응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분쟁대응지원 및 현지정부 소통 등에 관한 해외공관(현지 한국대사관)의 전문 인력 부재, 소극적 태도
- ②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부담
- ③ 분쟁·소송에 대한 대응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 ④ 분쟁·소송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
- ⑤ 침해입증의 어려움
- ⑥ 기타 _____

5.5. 지식재산권 침해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이나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지 분쟁대응 지원 및 해당국 정부와 소통을 위한 해외공관 내 특허청의 전문인력(특허관) 배치
- ②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을 위한 소송비용·컨설팅 지원
- ③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현지 법제도에 대한 정보의 적시 제공

- ④ 국내에서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위한 비용·컨설팅 지원
- ⑤ 현지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 간 심사협력
- ⑥ 기타 _____

5.6.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해 정부 지원정책 및 제도 보완이 어떠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침해피해 사례를 적어주시면 현지 IP-DESK 및 해외공관에서 지원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처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송석민 서기관 전화 : 042-481-3917	KOTRA 해외지재권실 심자용 차장 전화 : 02-3460-3358

이전

완료